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사업 참여 대학 모집 공고

대학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청년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대학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는 서울캠퍼스타운 사업의 2024년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장

1. 공모개요

- 사업내용 : **창업형 캠퍼스타운**
 - (창업육성)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활성화) 대학 인적·물적 자원과 자치구간 협력으로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기간 : **기본 2년('24~'25년) + 연장 1년('26년)**
 - 연단위 협약으로 진행하며, 매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등이 미흡할 경우 사업기간 중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2차년도 성과평가('25.12) 결과 가등급, 나등급 대학은 3차년도('26년) 사업 가능하며, 다등급 대학은 3차년도 사업 연장 제외되고 1년간('26.1.1~12.31)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 참여 불가
- 사업예산 : **대학별 年 13~15억원 이내** ※ 자치단체보조금
 - 年 13억원 이내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조정에 따라 年 2억원 이내 예산은 대학별 추가(차등) 지원

1차년도 ('24년)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별 비전·추진의지, 제안 내용(프로그램) 효과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지원 예산 심의·의결 ('23.10~12)
2~3차년도 ('25, '26년)	매년 성과평가 결과 가등급 대학은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전년도 12월) 거쳐 年 15억원 이내 지원, 나등급 대학은 年 13억 이내 지원, 다등급 대학은 사업 중단

* 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참여 대학 자부담 / 대학 및 자치구 대응자금 필수 투입

** 예산 지원기간 및 규모, 사업내용은 市 예산안 확정,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7개소 이내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대학 참여 포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 70점 이상 대학 중에서 예비 대학 선정 가능

2. 공모신청 및 선정

○ 공모참여 : 대학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자치구 공동 제안

- 대학 :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학교

* 사이버대학, 기술대학은 제외

- '24년 기준, 단위형 사업 참여 대학은 공모 신청 가능하나, 종합형 사업 참여 대학(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포함)은 공모 신청 불가

○ 공고기간 : '23. 6. 7.(수) ~ 7. 14.(금)

○ 사업설명회 : '23. 6. 12.(월) 10:00,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컨퍼런스홀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81, 더라운펜트하우스오피스텔 3층

※ 사업설명회 일정은 서울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3. 7. 17.(월) 10:00 ~ 7. 19.(수) 17:00, 3일간

○ 신청방법 : 기간 내 공문(전자문서) 및 신청서류(방문) 제출 ※ 우편제출 불가

< 제출 서류 >

- ① 신청 및 서류제출 공문 1부(자치구에서 구청장 직인 전자문서 제출)
 - ② 사업신청서 1부(양 기관 직인으로 사업신청 협의완료 된 것으로 간주)
 - ③ 사업계획서 15부
 - ④ 사업계획 발표 자료(PT) 15부(사업계획서 요약한 자유서식, 12분 이내 발표)
 - ⑤ 증빙자료 등 기타 필요서류 15부(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 ③, ⑤ 서류 A4 좌철 양면인쇄 제본, ④ 서류 A4 단면인쇄 제본
- ②, ③, ④, ⑤는 전자매체(USB)로 추가 제출(인쇄본 + USB, HWP·PDF)
- ** 제출서류 세부 규정 및 양식은 '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선정

① 신청요건 검토 및 현장확인

- ✓ 신청요건 미비 대학은 심사평가위원회 검토 및 의결로 PT 발표 제외
- ✓ 위원별 대학 창업지원시설 방문 및 현장 확인(7.24~7.26 예정)

② 사업계획서 및 PT 발표 평가

- ✓ 평가항목 : ① 신청기관 역량 및 추진의지 ②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③ 사업 예산 구성 ④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적정성 ⑤ 창업기업 육성
⑥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⑦ 성과관리

- 발표평가일 : '23. 8. 3.(목) 예정(접수 완료 후 재안내)

○ 결과발표 : 서울시 누리집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23. 8. 7.(월) 예정)

- ※ 평가를 통해 참여 대학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 대학 확정

3. 신청요건

① 전담조직 설치 : 대학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운영(5명 이상)

- 전담 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확보
- 전담조직은 '전담조직의 장' 1명 및 '전담인력'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중 전담인력은 캠퍼스타운 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인 수행인력으로서 대학 정규 직원 2명 이상 필수 배치
 - * 전담조직의 장은 대학의 임명을 받은 자로 창업 관련 경력 보유 및 사업 기획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선임하고, 교내 타 직위와 겸직 가능
 - ** 전담인력은 캠퍼스타운 전담조직(사업단)으로 발령해야 하며, 대학 정규 직원의 경우 교내 타 부서와 겸직 근무시 위의 전담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전담조직에 근무하는 인원은 창업 관련 자격증, 창업·지역활성화 관련 경력 보유(3년 이상)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위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이 3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운영
- (가점) 대학 정규 직원을 3명 이상 배치할 경우 0.5점 가점 부여

② **창업지원시설** : 창업기업 年 50팀 이상 발굴·육성 가능한 공간 운영

-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그 중 예비 창업기업은 20%(10팀) 이상 육성
 - * 창업기업은 대학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 후 '24년 3월까지 입주 완료하여야 함
-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입주공간은 총 500㎡ 이상 확보하여 신청
 - * 입주공간은 지원시설 및 공용면적 등은 제외한 공간이며, 창업기업 1팀당 독립형 1실 원칙으로 팀당 15㎡(4인 기준), 예비 창업자는 팀당 6.6㎡(2인 기준) 공유형 입주공간 지원 권고
 - ** 신규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市 예산 지원은 없으나, 창업기업 50팀 발굴·육성 공간 이외에 20실 이상 규모의 창업지원시설 추가 조성시 예외적으로 예산 지원 가능 (총 사업비 이외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③ **대응자금**

대 학 : 年 1억원 이상 현금 투입

- 사업운영비,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기업 투자자금 지원

< 투입 가능항목 >

① **창업육성 프로그램 및 창업기업 투자자금 지원**

- 창업기업 투자자금은 외부투자기관 재원도 인정하되, 대학의 자체 자금 50% 이상 필수 투입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투입을 조건으로 함
 - * 대학 내·외부 재원투입시 사업 협약 기간 내 캠퍼스타운 사업 투입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협약서 또는 공문 첨부하여 제출

② **사업운영비**

- 창업지원시설 임차료 및 공과금, 전담인력 중 외부채용 인건비만 인정 (창업지원시설 보증금, 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전담인력 중 학교 정규직원 인건비 등 불인정)

- **(가점)** 年 1억5천만원 초과 투입시 1점 부여, 年 3억 초과 투입시 3점 부여

자 치 구 : 年 3천만원 이상 사업비 투입

- 창업지원시설 조성,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업비 투입
 - * 자치구 예산 편성시 캠퍼스타운 사업 연계 대응 사업임을 명시(예산서, 사업별설명서 등)

4.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① 예비·초기 창업기업 육성

- 우수 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 창업기업이 캠퍼스타운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업 수요에 맞는 공간 및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BM고도화, MMP제작, 사업화지원, 시장진입·마케팅, 투자유치, 실증·검증, 글로벌 시장 확대 등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지역 청년 대상 창업지원, 대학 보유 기술을 활용한 교원창업,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활동 유도 등 **대학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발굴**
 - * 단순행사, 외부 용역사 일임, 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창업기업 효과적 지원 위한 고도화된 운영 방법 및 지원 내용 제시
-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창업기업과 지역간 협력 위한 대학·지역 행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 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연계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 * 캠퍼스타운 전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대학간 또는 대학·민간기관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외부협력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②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공헌하는 프로그램 운영
 - * 창업기업의 지역 안착, 지역 현안 문제 해결(상권살리기, 뿌리산업 활성화 등), 대학 자원 개방·활용 확대와 같이 대학별·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항을 자치구와 함께 발굴
- 지역 인프라 설치(간판정비, 주거환경 개선, 문화가로 조성 등), 지역문제 단순 도출 프로그램(공모전, 지역연계수업), 창업기업 활동과 관계 없는 지역 행사 개최 등은 지양

✓ 청년 초기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85% 내외,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은 15% 내외로 구성·운영

③ 기타

- 자치구 전담 부서는 경제·일자리 부서 내 설치 권고
- 대학·자치구·지역간 거버넌스로서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필요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협의회 구성·운영
 - * 구청장, 대학총장, 시의원, 주민대표, 상인대표, 직능단체장 등 참여
- 성과 목표 관리 계획 및 홍보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완사항 도출 및 환류를 위해 프로그램별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비용 일체는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사업 수행·완료 후 서울시가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현장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 사업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PT발표)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PT발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의 장' 이상의 책임 있는 자가 하고, 질의·응답도 발표자가 대응해야 함
-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자치구의 경우,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 * 캠퍼스타운 종합 성과평가 용역, 2023년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용역 중간·최종 평가결과

- 심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0점 미만 대학은 선정에서 제외
- 총 7개 이하의 대학·자치구가 신청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 결정하며, 평가 결과 70점 미만 대학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보조금은 환수되고, 향후 캠퍼스타운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사업계획 외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는 협약 시작일 이후 5개월 이내, 전담조직 설치는 협약 시작일 후 30일 이내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 등 주요 사항 미이행시 사업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 대학 전담조직의 인력은 가급적 교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사업 운영 도중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심사평가위원회 의견 등 서울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사업계획서를 협약 체결시 제출
 - ※ 제출 기한 등은 평가결과 공개 후 추후 안내
- 문의 :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02-2133-4826, coolluck@seoul.go.kr)

참고 1

심사평가위원회 평가지표(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점수
총 계			103.5
소 계			100
신청기관 역량 및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자치구)의 창업육성, 지역활성화 성과 · 대학의 자원 투입 및 지역과의 소통·협력 의지 ·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한 자치구의 지원 의지 및 역할 		15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 전략, 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전담인력 계획 적정성 		10
사업 예산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연도별 사업비 구성 및 사용계획 적정성 (대학·자치구 대응자금 투입계획 포함) 		10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시설 운영 타당성(신규 시설 조성 적정성 포함) · 창업기업 지원 환경 적정성 		15
창업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 교내·지역 창업 활성화 노력, 대학별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 창업기업 지원 통합·연계 프로그램 적정성 및 효과성 		35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수요·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여부(독창성) ·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여부(효과성) 		10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 및 홍보 방안 		5
소 계			최대 3.5
가점	· 대학 정규직원 투입 규모	3명 이상	0.5
	· 대학 대응자금 투입 규모	年 1.5억 초과	1
		年 3억 초과	3

※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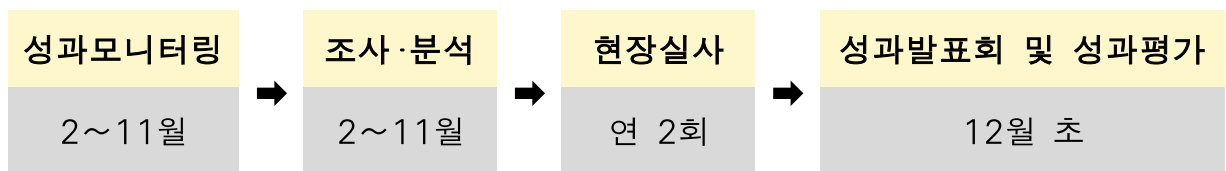
성과평가 개요 및 주요지표(안)

□ 평가 시기 : 매년 12월 초

- 1월~11월까지 시행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 12월에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년 12월 성과평가 완료

구 분	평가 시기	평가내용	비 고
1차년도(2024년)	'24.12월 초	'24.1~11월 추진실적	
2차년도(2025년)	'25.12월 초	'25.1~11월 추진실적	
3차년도(2026년)	'26.12월 초	'26.1~11월 추진실적	

○ 평가 절차



□ 평가 주체 : 성과평가 전문기관, 성과평가위원회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과평가기관에서 평가
- 정성평가 : 평가기관(공통지표) & 성과평가위원회(자율지표)
※ 공통지표(80점, 평가기관) + 자율지표(20점, 성과평가위원회)

□ 평가 결과 : 평가지표 점수에 따라 등급화

- 90점 이상 가등급, 80~89점 나등급, 80점 미만 다등급

□ 성과지표(안)

구분	성과지표	평가방법	비고	
공통 (80점)	사업관리 및 추진의지	① 보조금 집행실적	정량/절대평가	
		② 추진조직 관리·운영	정량/절대평가	
		③ 입주기업 관리·운영	정량/절대평가	- 입주기업 수 - 창업공간 실태조사 결과 등
		④ 대학 및 자치구 기여도	정량/상대평가	- 대학 및 자치구 투자실적
	창업 기업 육성	⑤ 창업 전환자 수	정량/절대평가	
		⑥ 창업지원사업 선정 건수	정량/절대평가	- 입주기업이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건수
		⑦ 창업자금 지원 규모	정량/상대평가	- 총사업비 대비 입주기업 창업활동비(지원금) 지원 비율
		⑧ 입주기업 만족도	정성/절대평가	- 창업공간, 창업지원프로그램 등
		⑨ 입주기업 참여도	정량/상대평가	- 창업지원프로그램 참여도
		⑩ 입주 및 졸업기업 생존율	정량/절대평가	- 입주시점부터 사업기간동안 창업기업 생존율
		⑪ 입주기업 투자유치액	정량/상대평가	- 입주시점부터 입주기간동안 누적 투자유치 총액
		⑫ 입주기업 매출성장률	정량/상대평가	- 입주기업의 전년대비 매출 성장률
	지역 활성화	⑬ 자치구 협력 확대	정성/절대평가	- 대학과 자치구의 협력 성과
		⑭ 지역활성화 선순환체계 구축	정성/절대평가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자율 (20점)	사업 선정 후 서울시·대학·자치구 협의를 통해 지표 선정 및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 대학의 특성 반영한 목표와 그에 대한 성과	

※ 향후 성과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가·변경·삭제 등 조정 가능

참고 3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안)

□ 비목별 개념

구분	사업비목	개념
프로그램 추진 경비	강 사 비	본 사업과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
	심사 및 평가비	데모데이, 경진대회 등에 창업기업 심사·평가 시 대학 내·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
	멘 토 비	창업기업이 창업활동과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대학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멘토링)을 받는데 소요되는 경비
	회의비 및 자문비	본 사업 관련 업무 협의 및 자문성격의 경비로 대학 내·외부 전문가에 지급하는 비용 (전담조직 소속 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단 순 인 건 비	본 사업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프로그램용역비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사업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전문 분야의 업무를 용역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단 기 임 차 료	본 사업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회의실 등의 임차료
사업화 지원 경비	식비 및 다과비	본 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행사, 협업필요한 활동 및 업무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식사비 및 다과비
	창 업 지 원 금	시제품제작, 개발 등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에게 지원되는 비용
인건비성 경비	창 업 시 상 금	캠퍼스타운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경진대회 등에서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 지원되는 비용
	보직 및 겸직수당	대학총장으로부터 캠퍼스타운 전담조직의 장으로 임명을 받아 대학의 타 사업 및 업무(대학교수직 등)와 동 사업의 업무를 겸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운영비성 경비	프 로 그 램 기 획 비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전담인력의 사업 기획·실행 및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
	교 육 훈 련 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창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등 창업보육 관련 교육비
	공 간 임 차 료	본 사업을 위해 대학 밖의 건물을 임대하여 확보한 공간에 대한 임차료
	공 간 운 영 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공과금 등
	소모성 물품구입	본 사업에 필요한 공간 운영을 위한 소모성 비품 구입 경비
	여 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의 내·외부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특 근 매 식 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매식비
	회 계 감 사 비	당해연도 본 사업 총사업비(시비+대응자금)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를 받기 위한 경비
	홍 보 비	본 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
	물 품 임 차 비	본 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임차시 사용되는 경비
시 설 수 선 비	캠퍼스타운 창업기업 입주공간 및 지원공간의 기본적 기능유지 및 시설 수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인테리어 비용 집행 불가)	
물 품 취 득 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 경비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물품 취득에 사용되는 경비	

□ 집행기준

구분	사업비목	기준 및 한도
프로그램 추진 경비	강 사 비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등급에 따른 지급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실시간으로 화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 사 및 평 가 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1일 최대 50만원 이내(온라인 화상 심사 및 평가 포함) ○ 서면 심사 및 평가인 경우 7만원 이내(1일 기준) * 캠퍼스타운 전담조직 소속 인력에게는 심사 및 평가비 지급 불가
	멘 토 비	○ 1일 30만원 이내 ○ 비대면인 경우, 1일 7만원 이내 * 1인 멘토에게 월 200만원 초과 지급 불가
	회 의 비 및 자 문 비	○ 대 면 : 2시간 이내 15만원/초과시 20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2시간 이내 5만원/초과시 7만원(1일 기준) * 비대면 : 서면회의, 서면자문, 화상회의 등 * 캠퍼스타운 전담조직 소속 인력에게는 회의비, 자문비 지급 불가
	단 순 인 건 비	○ 1인 8시간/일 이내, 1인 60시간/월 이내 투입 (당해연도 서울형 생활임금 고시 기준 준용)
	프로그램 용역비	○ 외주용역 시 사업단의 업무 범위와 외주용역의 업무 범위 명확하게 기재 / (일괄용역은 불가) * 사업비목으로 편성된 항목(회의비 및 자문비, 식비 및 다과비 등)을 프로그램 사업비 내에 중복하여 편성불가 * 추정가격과 내용에 따라 지방계약법 준수 철저
	단 기 임 차 료	○ 실비정산 * 사업(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 시설, 장비 등의 임차비 * 시설, 장비는 가급적 공공 및 대학시설을 활용
사업화 지원 경비	공 통	○ 한 창업기업(팀)에게 창업지원금과 창업시상금 중복 지원 불가
	창 업 지 원 금	○ 창업기업(팀) 당 연간 3천만원 이내(지출증빙 필수) * 입주는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단, 사업자등록 미이행시 환수 조건
	창 업 시 상 금	○ 연간 1천만원 이내 * 창업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성과팀(자)에게 3백만원 이내
인건비성 경비	공 통	○ 인건비성 경비는 시비의 15%이내 (보직 또는 겸직수당 + 프로그램 기획비)
	사업단장 보직 또는 겸직수당	○ 월 100만원 이하 * 대학 내부규정에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대학 내부규정을 따라야 함 * 대학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겸직(보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집행 불가
	프로그램 기 획 비	○ 1인기준 최대 5천만원 이내(성과급은 미포함) ○ 시비의 15% 범위 내(4대보험, 퇴직금 등 제 수당 포함) * 기간제 전담인력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법령 준수 * 대학 정규 전담인력 집행 불가 * 성과급, 상여금 등 지급기준 등은 대학 내부규정 내에 자율로 정함

구분	사업비목	기준 및 한도
운영비 성 경비	교육 훈련비	○ 전담인력 1인당 100만원 이내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비용은 교육훈련비로 지급 불가 * 자격증시험에 따른 응시 수수료는 지급 불가
	공간 임차료	○ 시비 투입 불가, 대응자금으로만 집행 가능
	공간 운영비	○ 공간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인터넷 등 공과금과 각종 보험료, 우편발송비, 운송비, 청소비 등
	소모성 물품구입	○ 공간상주 인원(전담인력+창업팀수)×월 10만원 이내
	여비	○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시외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실비정산, 영수증 첨부
	특근 매식비	○ 1인 1.2만원 이내 * 평일 점심 불가 * 출장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및 주말식대 불가 * 주류 등 유흥성 경비로 지출 불가
	회계 감사비	○ 최대 500만원 이내
	홍보비	○ 홍보물(팸플릿, 브로셔 제작 등) 제작비로 집행 * 책자형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인 경우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을 포함한 배포계획서 작성 * 캠퍼스타운 사업의 프로그램 및 성과 등 홍보물 제작시 사용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서울시와 사전협의
	물품 임차비	○ 시비 최대 3,000만원 이내 ○ 실비정산 * 자산성 물품확보는 임차(리스)를 원칙으로 함 * 세부실행계획서에 승인된 물품에 한정함
	시설 수선비	○ 시비 최대 3,000만원 이내 * 입주기업의 창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설 및 임차한 시설은 집행 불가
물품 취득비	○ 시비 최대 3,000만원 이내 ○ 실비정산 * 물품 임차와 비교하여 구입비용이 낮은 경우 구입 * 세부실행계획서에 승인된 물품에 한정하며,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물품 취득비로 사업 당해연도 종료 2개월전까지 구매 및 설치를 끝내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구입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우선 활용 * 대학은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자치구는 물품관리현황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년 서울시에 제출	

※ 최종 6기 운영지침(사업비 집행기준) 및 캠퍼스타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아래 내용으로 제안 프로그램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프로그램 기획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작성
(제안 기관의 특화·강점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제안할 수 있음)

①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시 1차년도 사업 실행계획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 작성
- 단순 행사 개최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창업기업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으로 기획
-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추진시 협력 가능한 기관과 사전 협의 거쳐 프로그램(안) 및 협력 기관 명단 제시

②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 해외 엑셀러레이터 연계한 IR 행사, 국외 제품 전시(CES, MWC 등)와 같은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목표로 프로그램 기획·운영
-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캠퍼스타운 전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쟁 절차를 거쳐 최종 5개사 내외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 ※ 참여 기업이 관련 비용을 일정 부담하도록 지원 한도 등 설계
(항공·숙박료, 체류비 등은 참여 기업이 부담하도록 사업 운영지침 등에 반영 예정)
-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창업기업 해외 수출액 및 투자유치액 등 구체적인 달성 목표 제시
- 견학성 일정, 단순 행사 참여, 해외 시장조사 등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

③ 네트워킹 프로그램

- 최소 3개 이상의 대학 및 창업지원기관 등 참여
-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VC, 엑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달성 목표(창업기업 참여 효과성 등) 명확하게 제시

① 창업지원시설 입주공간 : 최소 500㎡ 이상 확보

- 입주공간 : 기업 지원공간 및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간으로,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직접 사용하는 순수 공간

< 입주공간 산정 제외 >

① 기업 지원공간

- 회의실, 다목적실, 공유주방, 메이커스페이스, 폰부스, 테스트베드 등

② 공용면적

-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화장실, 통로, 탕비실 등

- 창업기업 1팀당 독립형 1실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 창업자는 공유형 입주공간 지원
- (최소) 창업기업 1팀당 11.5㎡(4인 기준) 지원하고, 예비 창업자는 4.5㎡(2인 기준) 지원
- (권고) 창업기업 활동 지원 위해 창업기업 1팀당 15㎡(4인 기준) 이상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는 1팀당 6.6㎡(2인 기준) 이상 지원

② 20실 이상 규모의 창업지원시설 조성

- 사업 신청요건인 50팀 이상 창업기업 발굴·육성하는 창업지원시설과 별도로 20실 이상 규모의 창업지원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경우 예산 지원
- (규모) 20팀 이상 육성 가능한 규모를 가진 단일시설로, 입주공간은 최소 230㎡ 이상 확보
 - ※ 입주공간 : 기업 지원공간 및 공용면적 제외한 공간
- (조건) 대학(학교법인 포함) 또는 자치구 소유 건물에 조성하고,
 - 협약 시작일 후 11개월 이내 준공
 - ※ 대학재단법인 소유 건물의 경우 캠퍼스타운 사업을 위해 대학에 제공한다는 증빙서류 제출 (이사회 의결서, 법인-대학간 공문 등)
 - ※ 조건 미이행시 지원 사업비는 환수하고, 성과평가 감점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총 사업비(年 13~15억 이내) 이외 최대 2억 이내 별도 지원

- ✓ 기존시설 철거, 바닥·천장, 벽면 도배, 전기, 목공, 방수, 상하수도, 전기, 통신, 소방, 조명, 실 구분 칸막이, 사인물 부착 등 인테리어 공사 지원 (책상, 의자, 냉난방 시설, 가구 등 물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음)